

노인인권보호지침

노인인권이란?

‘노후에도 인간답게 생활할 수 있는 권리’

노인이라는 이유로 인간의 존엄성을 차별받지 않을 권리

= 노인의 **존엄성이 보호**되고

노인 **스스로 존엄성을 지킬 수 있고**

안전하게 살 수 있으며

착취와 학대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되는 것



시설생활노인의 기본권리

- 존경과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고, 차별·착취·학대·방임을 받지 않고 생활할 수 있는 권리
- 개인적 욕구에 상응하는 질 높은 케어와 서비스를 요구하고 제공받을 권리
- 안전하고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
- 시설 내·외부 활동에 신체적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
- 개인적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대한 권리
- 우편, 전화 등 개인적 통신을 주고받을 권리
- 정치적, 문화적, 종교적 활동에 제약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
- 개인 소유 재산과 소유물을 스스로 관리할 권리
- 비난이나 제약을 받지 않고 시설운영과 서비스에 대한 개인적 견해와 불평을 표현하고 이의 해결을 요구할 권리
- 시설 내외부에서 개인적 활동, 단체 및 사회적 관계에 참여할 권리
- 시설 입·퇴소, 일상생활, 서비스 이용, 제반 시설활동 참여 등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부분에서 정보에 접근,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권리

시설생활노인의 권리보호를 위한 윤리강령

존엄한 존재로 대우 받을 권리	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◆ 의사에 반하는 어떠한 노동행위 금지 ◆ 시설의 모든 서비스에 자유롭게 접근·이용 할 기회부여 ◆ 시민으로서, 노인으로서 갖는 권리를 완전히 행사할 수 있도록 차별·감금·방해·강압·보복 행위 금지 ◆ 어떠한 이유로도 신체·정서·성적 학대,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, 유기 및 방임 등의 학대행위를 해서는 안되며, 학대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관련법률과 지침에 따라 신속한 보호조치 ◆ 가족은 면회나 전화 접촉 등을 통한 유대관계 지속적 유지, 존경하며, 시설의 서비스나 운영에 관하여 적극협조 ◆ 시설은 종사자에게 노인의 권리에 대한 홍보교육을 분기별로 실시 ◆ 종사자는 수발 및 서비스 과정에서 노인의 권익신장을 위한 상담과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며, 노인의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거나 침해 받은 경우 회복과 구제를 위한 적극적 조치 강구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◆ 노인의 삶의 질 증진, 잔존능력을 유지, 자립능력을 고양시키기 위한 질 높은 전문적 수발과 서비스 제공 ◆ 정기적 상담을 통한 개별적 욕구와 선호, 기능상태를 고려 개별화된 서비스와 급여계획 수립, 적극적으로 이행 ◆ 개인적 선호와 건강 및 기능상태에 따라 다양한 영양급식 제공 ◆ 의학적 판정없이 개인적으로 복용하는 약물을 금지시켜서는 안 된다. ◆ 시설은 종사자의 능력개발을 위한 직무훈련·교육기회를 충분히 부여, 케어 및 서비스 능력 제고 ◆ 월별 입소비용 미납 등의 경제적 이유만으로 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 제한해서는 안 되며, 입소비용 문제 해결을 위한 지지망 개발, 노인의 전원 또는 퇴소시까지 최선의 서비스 제공 ◆ 종사자는 직무수행상의 사고로 인하여 위험을 초래하지 않기 위해서 안전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.
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	신체적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◆ 시설은 안전하고 깨끗하며 가정과 같은 환경 제공 ◆ 공간이 허용하는 한 개별적 수납공간 제공 ◆ 목욕, 의복 및 침구의 세탁 등 위생관리 철저 ◆ 적절하고 편안한 조명, 음향 제공 ◆ 편안하고 안전한 실내온·습도 유지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◆ 생활노인 또는 종사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히 높거나, 대체할만한 간호나 수발방법이 없거나, 증상의 완화를 목적으로 불가피하게 일시적으로 신체적 제한을 하는 경우 등의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체적 제한이나 구속을 해서는 안 된다. ◆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로 인해 일시적으로 신체를 제한하거나 구속할 경우 심신의 상황, 구속시간, 신체적 구속 사유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, 본인이나 가족에게 그 사실을 통지 ◆ 시설규정에 위반되거나 의료적 목적 달성을 위한 경우 제외하고 신체구속이나 심리적인 영향을 미치는 약물 처방 금지

<p>사생활 및 비밀 보장에 대한 권리</p> <p>◆ 사생활 보장, 직무수행과정 얻은 비밀은 철저히 보안하며, 질병과 치료, 통신, 가족 등과 같은 어르신인 사생활에 관한 정보나 기록을 사전동의 없이 공개 불가능. 다만, 인지능력이 제한된 노인의 경우 가족 등 관계자의 동의 후 서비스 증진을 위한 전문적 목적에 한하여 정보 공개</p>	<p>통신의 자유에 대한 권리</p> <p>◆ 자유롭게 전화 이용, 우편물 발송, 노인의 우편물을 개봉하지 않는 등 개인적 통신의 권리 최대한 보장</p>
<p>정치, 문화, 종교적 신념의 자유에 대한 권리</p> <p>◆ 정치적 이념 존중, 투표 등의 정치적 권리행사에 부당한 영향력 행사 금지</p> <p>◆ 종교적 신념 인정, 특정 종교행사 참여의 강요 등 종교적 신념의 변화를 목적으로 부적절한 영향력 행사 금지</p> <p>◆ 문화적 다양성 인정, 그에 따른 생활양식의 차이 최대한 존중</p>	<p>소유 재산의 자율적 관리에 대한 권리</p> <p>◆ 개인 소유의 재산과 소유물은 갖거나 이용할 권리 최대한 보장,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권리 보장</p> <p>◆ 노인 스스로 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노인이나 가족 또는 기타 후견인의 특별한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시설에서 사용, 처분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분기별 또는 수시로 자정 사용에 대한 결과 통보</p>
<p>불평의 표현과 해결을 요구할 권리</p> <p>◆ 의견이나 불평을 수렴하기 위한 공식적 절차 마련, 시행</p> <p>◆ 본인이나 가족에 의해 제기된 불평 즉각적 해결을 위한 조치 실시</p> <p>◆ 본인이나 가족이 불평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차별적 처우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.</p>	<p>시설 내외부 활동 참여의 자유에 대한 권리</p> <p>◆ 시설내의 자발적 모임이나 다른 노인과 유대관계 형성 및 의사소통할 수 있는 권리보장</p> <p>◆ 다른 생활노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신의 의사에 따라 시설내부의 다양한 서비스, 여가, 문화활동에 참여 기회 부여</p> <p>◆ 시설 외부의 건강, 사회, 법률, 또는 다른 서비스 기관의 이용 적극적 조장, 필요시 지역사회 서비스 연계</p> <p>◆ 원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면회나 방문각 거부 금지</p> <p>◆ 자유로운 외출, 외박 기회 최대한 보장</p> <p>◆ 지역사회 주민들은 시설 생활노인의 지역사회 활동 참여 적극적 조장, 지원하며 지역사회와의 유대관계 증진을 위한 노력 실시</p>
<p>정보 접근과 자기결정권 행사의 권리</p> <p>◆ 의사에 반하는 전원퇴소 금지, 불가피한 경우 전원퇴소 시 사유 통보, 의사결정과정에 본인 또는 가족 참여</p> <p>◆ 본인이 요구할 경우 건강상태와 치료-케어, 제반 서비스에 관한 정보와 기록 접근 허용</p> <p>◆ 의식주, 보건의료서비스, 여가활동 등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부분에서 자기결정권 행사</p> <p>◆ 노인의 권리 변화, 건강과 일상생활의 변화, 케어 및 의료적 처치의 변화 등과 관련하여서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사전에 본인과 가족에게 통보, 결정과정에 본인 또는 가족 참여시키고 이들의 결정 존중</p> <p>◆ 생활노인의 권리, 시설 입·퇴소 및 운영과 관련된 시설의 규칙과 규정을 구두 또는 문서로 본인과 가족에게 충분히 설명 또는 공지</p>	<p>노인학대 신고</p> <p>노인학대 신고전화</p> <p>1577-1389</p> <p>신고자의 비밀보장 신고인의 개인정보에 대한 비밀을 보장합니다. 신분은 보장되어야 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신분이 노출되어서는 아니된다. (노인복지법 제 39조의6제3항)</p>

 노인학대 유형

<p>신체적 학대</p> <p>물리적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혹은 정신적 손상, 고통, 장애를 유발시키는 행위</p> 	<p>정서적 학대</p> <p>비난, 모욕, 위협, 협박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</p> 	<p>성적 학대</p> <p>성적수치심 유발행위나 성폭력(성희롱, 성추행, 강간) 등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행위</p> 
<p>경제적 학대</p> <p>노인의 의사에 반(反)하여 노인으로부터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아가는 행위로서 경제적 착취, 재산에 관한 법률 권리 위반, 경제적 권리와 관련된 의사결정에서의 통제 등을 하는 행위</p> 	<p>방임</p> <p>부양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거부,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과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 (노인 스스로가 최소한의 자기보호 관련행위를 의도적, 비의도적으로 포기하여 심신이 위험한 상황, 사망에 이르게 하는 자기방임 포함)</p> 	<p>유기</p> <p>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</p> 